# 남양주왕숙진건1 공공주택지구 **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**

(평가항목·범위 등의 결정내용)

2021. 3.



#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

## 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○ 본 계획은 남양주왕숙·왕숙2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추진 및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지구 내 기존 공장·제조업소 및 물류·유통기업 등의 지속적인 영업활동 유지와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기업 이전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목적으로 함

## 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

○ 본 계획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[별표2]의 2.개발 기본계획 중 [가. 도시의 개발]에 관한 계획 중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6조에 따른 공공 주택지구의 지정 절차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

#### < 표 1 >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1. 도시의 개발	10)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	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
	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	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
	지정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
주)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[별표2] 2.개발기본계획 가.도시의 개발사업 제3호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22조제4항에 의거 지구계획 승인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으로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[별표 2] 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외됨

자료: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제7조 제2항 관련 [별표2]

## 1.3 계획의 개요

○ 계 획 명 : 남양주왕숙진건1 공공주택지구

○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, 배양리 일원

○ 사 업 규 모 : 269,760 m²

○ 사업시행자: 한국토지주택공사

○ 승 인 기 관 : 국토교통부

○ 협 의 기 관 : 환경부

○ 사 업 기 간 : 2021년 ~ 2025년

## 1.4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

## 1.4.1 추진 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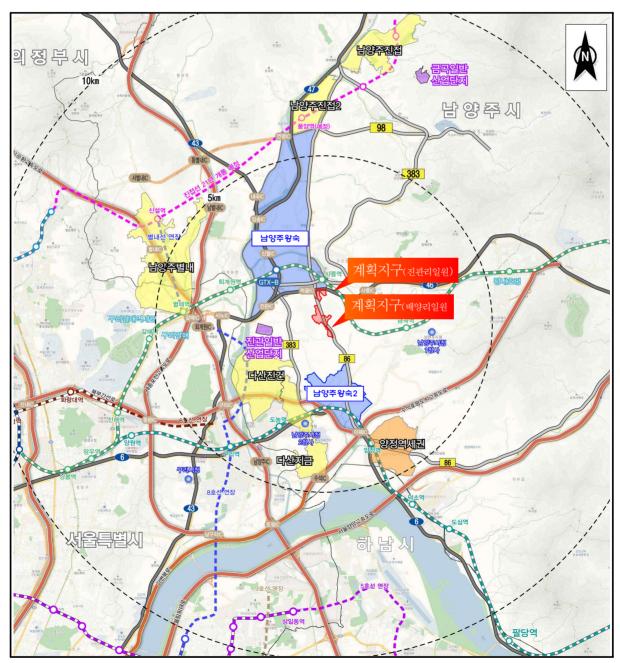
○ 2020. 12. 10.: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(LH→국토부)

○ 2021. 2.10. ~ 2.17. :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

○ 2021. 3. :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

## 1.4.2 향후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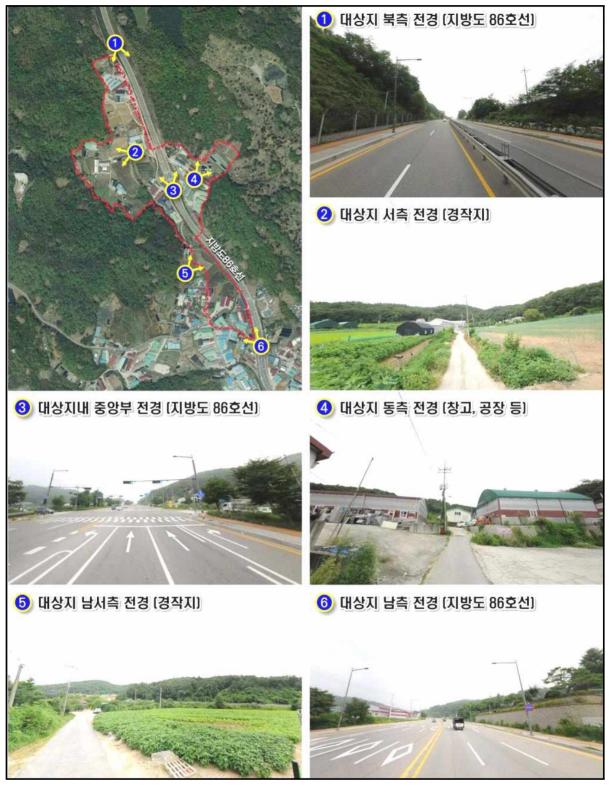
2021. 3. ~ 4.
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



(그림 1 ) 계획지구 위치도



( 그림 2 ) 계획지구 현황사진(진관리 일원)



( 그림 3 ) 계획지구 현황사진(배양리 일원)

#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

## 2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

- 근거법령: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8조,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
- 주관행정기관 : 국토교통부
-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: 총 9인(국토교통부, 환경부, 지자체, 관련 전문가 등)
- 심의방법 :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제5조제3항에 따라 **서면심의**
- 심의기간 : 2021. 2. 10 ~ 2021. 2. 17 (1주)
- 결정사항: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,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,

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- 서면심의 사유
- ·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해당 사업과 유사한 평가서 등이 제출되어 이미 심의됨
- ·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

#### 제8조(환경영향평가협의회)

- ① 환경부장관, 계획 수립기관의 장,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(이하 "승인기관의 장"이라 한다)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- 1.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
- 2.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3.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
- 4.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(이하 "환경영향평가협의회"라 한다)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, 주민대표,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환경보건법」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

-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이 장에서 "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"이라 한다)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(이하 "개발기본계획"이라 한다)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/ 2. 토지이용구상안 / 3. 대안 / 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-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~이하 생략~

## 2.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

## 2.2.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

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연환경의 보전, 생활환경의 안정성, 사회·경제 환경과의
 조화성 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
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항목별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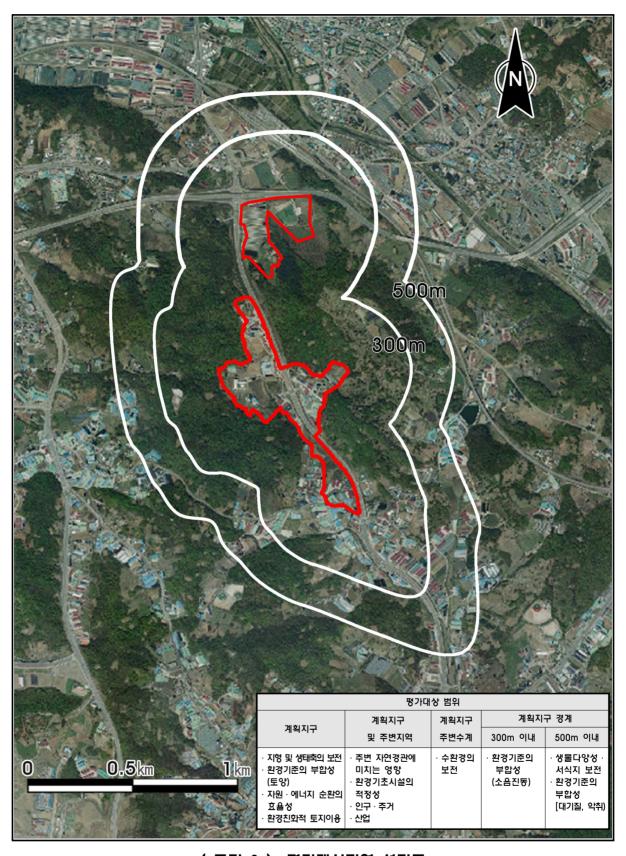
## < 표 2 > 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

구 분	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	대상지역 범위	비고
생 물 다 양 성 · 서식지 보전	○계획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으로 인해 동식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○계획지구 경계 500m 이내	○ 공사시 ○ 운영시
지 형 및 생태축 보전	○깎기·쌓기로 인한 지형변화 ○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	○계획지구	○ 공사시
자 연 환경의 무 변 보 전 미치는 영향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발생 (지형변화 및 건축물의 조성 등)	○계획지구 및 주변지역	○ 운영시
수 환 경 의 보 전	○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발생 ○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○ 수질오염총량 검토	○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	○공사시 ○운영시
생 활 환 경 <sup>대기질</sup> 환 경 의 기준의 안 정 성 부합성	○ 공사시 토공작업 및 투입장비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등 대기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○운영시 산업시설 입지, 난방연료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○계획지구 경계 500m 이내	○ 공사시
악 취	○산업시설 등 입지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○계획지구 경계 500m 이내	○ 운영시

## 남양주왕숙진건1 공공주택지구

# < 표 2 > 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- 계속

	구 분			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	대상지역 범위	비고
	환 경	토	양	○ 공사시 폐유발생(건설장비),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	○계획지구	○ 공사시
	전 경 기준의 부합성	성 .		○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· 진동 발생 및 영향 예상지역 ○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	○계획지구 경계 300m 이내	○ 공사시 ○ 운영시
생 활 환경의 안정성	시 4			및 영향예상지역  ○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 적정성 검토	○계획지구 및 주변지역	○공사시 ○운영시
	에 L 순 혹	원 · 너 지 환 의 율 성		○ 공사시 지장물 철거, 훼손수목, 공사 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 등으로 인한 폐유·폐기물 등 발생 ○ 공사장비 가동 및 연료사용,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○ 운영시 시설 이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	○계획지구	○ 공사시
사회·경제	환 경 <sup>7</sup> 토 지	<sup>진</sup> 화 이		○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○생태면적률 검토	○계획지구	○ 공사시 ○ 운영시
환경과의 조 화 성	인 구	. 주	거	○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○계획지구 및 주변지역	○ 공사시 ○ 운영시
	산		업	○ 운영시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○계획지구 및 주변지역	○운영시



( 그림 3 ) 평가대상지역 설정도

## 2.2.2 대안의 설정

○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검토할 대안의 종류는 【계획비교】, 【수요·공급】, 【입지】를 대안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비교·검토하였음

## 가. 계획에 따른 비교·검토

## < 표 3 > 계획비교(행정계획 수립 및 미 수립)

평 가 영 역	행정계획 수립시(Action)	행정계획 미 수립시(No Action)
토지이용 측면	○ 남양주왕숙지구와 인접하고, 광역교통	○본 계획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무분
	및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여 이주하는	별한 토지이용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
	공장 및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업활동	
	유지 및 체계적인 관리 도모 가능	
각종 보호지역에	○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을 저촉하지	○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
미치는 영향	않음	
생태계 훼손	○산지 연접 경계부로 녹지를 배치하여 산	○계획지구 주변지역에 대단위 택지지구
가 능 성	림녹지축을 연결하고 산지훼손을 최소화	등이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높으며 남측
	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생	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접으로 무분별한
	태계 훼손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함	계획시 생태계 훼손의 가능성이 높음
지형의 훼손에	○ 공사시 깎기 및 쌓기 등 불가피한 지	○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
미치는 영향	형변화가 발생되나, 대부분 평탄한 현	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
	지형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	
	훼손을 최소화	
쾌적한 생활	○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, 계	○개별적 토지 활용시 생활환경의 향상
환경의 유지에	획지구 내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여	에 어려움
미치는 영향	자연친화적 단지조성 도모	
자 연 경 관 에	○계획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의 변화가	○개별적 토지 활용시 체계적 관리의 어
미치는 영향	다소 예상되나, 적정 개발계획의 수립	려움에 따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발
	등을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	생 가능
	획함	
환 경 기 준 의	○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미미한 생활오염	○개별적 토지 활용시 점 및 비점오염원
유지 및 달성에	발생이 예상됨	증가
미치는 영향	ㅇ각종 저감대책으로 환경기준의 유지	
	및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	
선 정 사 유	○계획시행에 따라 토지이용효율을 증대	시키며, 공공주택지구(기업이주단지) 지정
		공급을 통해 원주민의 생활대책 및 재정착
		택사업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
	바, 계획을 시행(Action)하는 것이 바림	·직할 것으로 판단됨
선 정	©	

## 나. 수요·광급에 따른 비교·검토

○ 【수요·공급】에 따른 토지이용 구상(안)에 대해 비교·검토를 실시하였으며, 대안별 비교·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

# < 표 4 > 토지이용계획 구상(안) 비교

구분	대안1					대안2						
토지 이용 구상			AND THE PARTY OF T	CONTRACTOR AND ADDRESS OF THE PARTY OF THE P	10 (1) (1) (1) (1) (1) (1) (1) (1) (1) (1)				CONTRACT OF THE PROPERTY OF TH	AND SECOND SECON		
계획	<b>구분</b> 면적	산업 시설	자 <del>족</del> 기능 확보 시설	지원 시설	공공 시설	총계	<b>구분</b> 면적	산업 시설	자 <del>족</del> 기능 확보 시설	지원시 설	공공 시설	총계
丑	(m²) 구성비 (%)	24.5	71.3	14.9 5.5	43.6	100.0	(m²) 구성비 (%)	60.3	73.0	12.0	124.5 46.1	100.0
장점	○지방도86호선과 이격하여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하여 시설간 공간적 완충기능 유도 ○순환형 내부가로망 배치로 지구내 교통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 ○동서방향의 광폭 녹지축 구성으로 GB공간의 단절성 일부 해소 가능 ○공원의 분산배치로 단지내 종사자들의 공원이용성 및 접근성 우수				구내 강화 ○토지기 지구? ○남측	중심부 : 종사자들  능별 분 병관 형성 기존 취 인접지역	의 시설 -리배치를 ! 용이 락지구요	널의 인 로 시설 나 연접해	지성 및 집적 및 한 공원	접근성 계획적		
단점	○지원시설용지 분산배치로 분양 및 이용성       ○공원녹지의 분산배치로 동서축의 GB지역         약화 우려       연계체계가 미흡         ○토지기능의 분리배치로 도시기능 및 공간적         단절 우려											
선정 사유	○ 전체적	○ 공원녹지체계 및 주변의 GB지역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, ○ 전체적인 공원녹지체계 구축, 이주하는 공장ㆍ기업들의 특성에 따른 공간배분, 지원시설 용지의 이용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1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										
선정			(									

## 다. 입지에 대한 비교·검토

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 및 지구계, 토지이용현황, 관계기관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, 합리적,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·검토하였음

## < 표 5 > 입지에 대한 토지이용 구상(안) 및 대안별 비교표

구분		대안1		대안2			
위치							
규	구 분	면적(천m')	구성비(%)		구 분	면적(천m')	구성비(%)
모	계획규모	270	100.0		계획규모	256	100.0
장 점	계가 연접하 ○남측부 지구 계한 공간배	여 GB해제 경 단위계획구역( 치 및 기능보4	계 명확함 [취락지구)와 인 반 가능	1	정주환경 보	호 가능	여 기업활동 및
단 점	○취락지구 내 정주환경 악		가 기능상충으로		GB해제 및 국 지구내 GB횐	국토관리 불합· ·경평가 2등급	<ul><li>  공간이격으로</li><li>리</li><li>지가 다수 분포</li><li>개발에 따른 환</li></ul>
선정 사유	○대안2의 경우 대안1과 비교시 규모 축소로 이주기업에 대한 공급토지 확보측면						
선정		0					

## 2.2.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## 가. 평가항목의 설정

 본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1항
 [별표1]에 규정된 개발기본계획 세부평가항목과 "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(2017. 12, 환경부)"등을 참고하였으며, 계획 및 주변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함

## < 표 6 > 평가항목의 설정

평가항목			선정 사유		
계획의 적정성	상위계	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	○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○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 여부		
	대안	설정·분석의 적정성	○지구계 및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		
		생물 다양성 · 서식지 보전	○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동·식물상의 변화 예상 ○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필요 ○야생생물보호구역, 자연공원 등 자연환경자산 파악		
	-1 A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○계획 수립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 변화		
	자 연 환경의 보 전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○보전지역 분포여부 ○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예상 등		
입지의 타당성		수 환경의 보전	○ 공사시 토사유출, 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원 발생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 필요 ○ 수 환경 관련 보호지역 영향 여부 ○계획지구 및 주변수계의 수리·수문 현황 및 치수 안정성 부합여부 검토 필요		
	생 활	환경기준의 부합성	<ul><li>○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(기상)</li><li>○계획 수립에 따른 대기, 악취, 토양, 소음진동, 일조장해 등 영향 검토</li></ul>		
	* <sup>설</sup> 환경의 안정성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○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 오수 및 폐기물의 환경기초 시설과 연계처리 검토		
		자원·에너지순환의 효율성	○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수립 필요 ○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·저감대책		
	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(환경친화적 토지이용)		○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예상 ○계획시행 전·후 사회·경제환경의 변화		

## 나.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

○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토대로 선정한 현황조사,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

## < 표 7 >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

구	·분	현황조사	예측 및 평가방법	평가범위
계획의	적정성	① 조사내용	∘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검토 ∘계획의 비교 및 입지 측면 에서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·분석	∘계획지구 및 주변지역
자 연 환경의	생 물· 다양성 서식지 보 전	○육수 생물상 현황 -인접 하천의 분류군별 종 분 포 및 서식 현황	·육수생물상	∘계획지구 경계 500m 이내
보전	지 형 및 생태축 보 전	) a a l l l	∘토지이용구상 및 입지현황 을 고려하여 생태축 및 산 림축 단절여부 검토	·계획지구
	주 변 자 연 경관에 미치는 영 향	•	∘계획내용을 토대로 경관변화 여부 및 경관변화 정도예측 ∘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	''''

# < 표 7 >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- 계속

구분			현황조사	예측 및 평가방법	평가범위	
자 연 환경의 보 전	환7	수 경의 전	① 조사내용	○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○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○수질오염총량 검토 ○운영시 급수 및 우·오수 처리계획		
		기	① 조사내용 ○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 현황 ② 조사범위 ○계획지구 경계 500m이내 ③ 조사방법 ○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○5개 지점 × 2회	•계획시행 시 영향예상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예측하여 대기환경기준과 비교·평가	경계	
	환경	악 취	①조사내용	·문헌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영향 파악	∘계획지구 경계 500m이내	
생 활 환경의 안정성	경기준의부합성	기준 의 부 합	토양	① 조사내용     ◦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   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    ◦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   ◦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   ◦3개 지점 × 2회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 오염 영향예측 ○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	·계획지구
			① 조사내용	영향을 예측하여 소음환경 기준 등과 비교·평가	경계	

# < 표 7 >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- 계속

	구 분	현황조사	예측 및 평가방법	평가범위
	환 경 기 초 시설의 적정성	① 조사내용	•오·폐수 및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	' ' ' ' ' ' ' '
생 활 환경의 안정성	자원 · 에너지	① 조사내용	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·자원 및 에너지순환 관련	•계획지구
	순환의	현황조사 ② 조사범위 •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•문헌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·정리	검토 ·계획수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	
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	환 경 친화적 토 지 이 용	① 조사내용	•계획시행 전·후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파악	∘계획지구
	인 구 · 주 거	① 조사내용  ○인구 및 주거, 산업 현황  파악, 장래 변화예측 ② 조사범위  ○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○문헌자료 조사	∘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 인구 변화 예측	∘계획지구 및 주변지역
	산 업	<ul><li>① 조사내용</li><li>◦산업현황파악</li><li>② 조사범위</li><li>◦계획지구 및 주변지역</li><li>③ 조사방법</li><li>◦문헌자료 조사</li></ul>	·관련 계획에 따른 입주업 종 검토	∘계획지구 및 주변지역

## 2.2.4 환경현황 조사계획

-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,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(사업시행 전·후 환경변화)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
  - 환경질 조사항목 : 지표·지하수질, 대기질, 악취, 토양, 소음·진동
- 동·식물상 조사는 계획지구 내를 포함하여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조사하고, 동·식물의 출현 및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겠음

## < 표 8 >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

구 분	조사항목	조사 지점	조사방법
지표수질	유량, 수온, pH, DO, BOD, COD, TOC, SS, T-N, T-P, Chl-a, 총대장균군수, Cd, As, CN, Hg, 유기인, PCBs, Pb, Cr <sup>6+</sup> , PCE, 전기전도도, ABS(23개 항목)	5	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
지 하 수 질	pH, KMnO <sub>4</sub> 소비량(COD), NH <sub>3</sub> -N, NO <sub>3</sub> -N, SO <sub>4</sub> <sup>2-</sup> , Fe, Zn, F, Cl <sup>-</sup> , 페놀, Cu, Mn, As, Hg, Cr, Cd, Pb, Al, 맛, 냄새, 색도, 탁도, 증발잔류물(TS), 경도, 일반세균, 총대장균군(26개 항목)	2	먹는물수질 공정시험기준
대 기 질	SO <sub>2</sub> , CO, NO <sub>2</sub> , PM-10, PM-2.5, O <sub>3</sub> , Pb, 벤젠 (8개 항목, 3일)	5	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
악 취	공기희석관능법(복합악취, 1일)	5	악취공정 시험기준
토 양	Cd, Cu, As, Hg, Pb, Cr <sup>6+</sup> , Zn, Ni, F, 유기인화합물, PCB, CN, 페놀, BTEX, TPH, TCE, PCE, 벤조(a)피렌, 1,2-디클로로에탄(22개 항목)	3	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
소음·진동	소음도, 진동레벨	8	소음 • 진동 공정시험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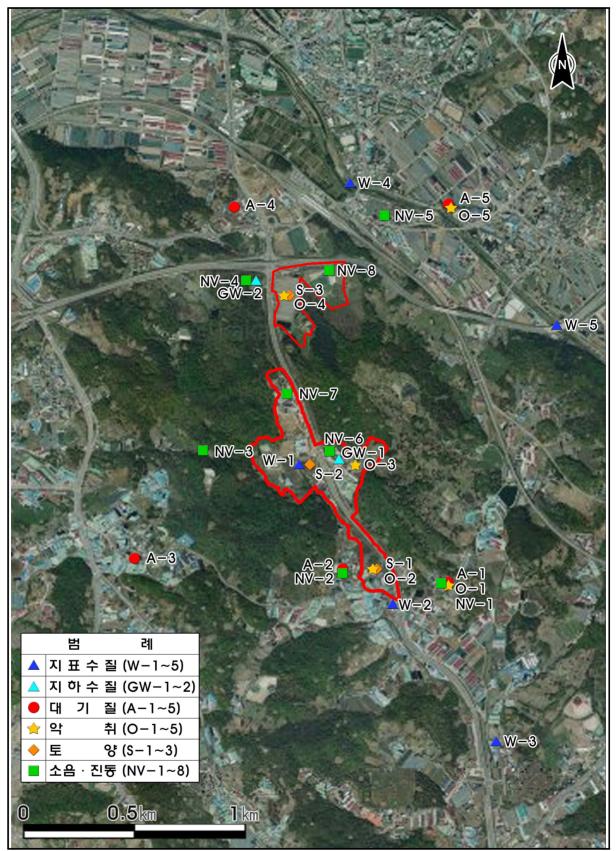
## 남양주왕숙진건1 공공주택지구

## < 표 9 > 조사지점 선정사유

구 분		조사지점	선정시유	비고
	W - 1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28 인근	계획지구 내 수계(고재천) 중류	_
<u> </u>	W-2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355 인근	계획지구 내 수계(고재천) 하류	_
지표 스피	W - 3	남양주시 일패동 615-4 인근	계획지구 하류 일패천(지방하천)	_
수질	W - 4	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14-46 인	그 계획지구 하류 사릉천(지방하천)	_
	W - 5	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119-9 인	그 계획지구 상류 사릉천(지방하천)	_
지하	GW - 1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268 인근	계획지구 내부(생활용—비음용)	_
수질	GW - 2	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3-9 인근	기획지구 내부(생활용—비음용)	_
	A - 1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169-7	주변 주거지역 대표지점(가옥)	_
	A - 2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316-4 인	그 주변 종교시설(배양순복음 중앙교회)	_
대기질	A - 3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98 인근	주변 주거지역(배양2리 마을회관)	_
	A - 4	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66-6 인근	구변 주거지역(가옥)	_
	A - 5	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410-2 인	그 주변 교육시설(시능푸른 유치원)	_
	0 - 1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169-7 인	그 주변 주거지역 대표지점(가옥)	_
	O - 2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300-2 인-	근 계획지구 내 악취 현황 조사	_
악취	O - 3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261-5 인	근 계획지구 내 악취 현황 조사	_
	O - 4	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1-3 인근	경기획지구 내 악취 현황 조사	_
	O - 5	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410-2 인	그 주변 교육시설(시능푸른 유치원)	_
	S - 1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301-1 인	그 계획지구 내(농경지)	_
토양	S - 2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47 인근	계획지구 내(농경지)	_
	S - 3	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2-2 인근	· 계획지구 내(비닐하우스)	_
	NV - 1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169-7 인-	근 생활소음(주거지역)	
	NV - 2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316-4 인	근 생활소음(주거지역)	1, 3차
2.0	NV - 3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 58-8 인	근 생활소음(주거지역)	조사시
소음	$\overline{NV - 4}$	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3-5인근	도로소음(양진로)	시행
진동	NV - 5	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594-5 인	그 도로소음(진건우회로)	
	NV - 6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275-4 인	그 도로소음(양진로)	2, 3차
	NV - 7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52-5 인	그 도로소음(양진로)	조사시
	NV - 8	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3-2 인근	도로소음(신경춘로)	시행

주) 1. 동·식물상 : 계획지구 경계 500m 이내

<sup>2.</sup> 측정지점 및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( 그림 4 ) 환경질 조사계획

#### 2.2.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

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

#### < 표 10 >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실시근거

관련법	내용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(주민 등의 의견수렴)	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
	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·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
	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#### 가.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○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(국토교통부) 또는 평가대상 지역 관할 시·군·구(남양주시)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s://www.eiass.go.kr)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개할 것임

#### 나.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·공람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: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/ 1회 이상

#### < 표 11 >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 내용

구분	내용
공고내용	1.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.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.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(공청회 개최 여부 의견 포함)의 제출시기 및 방법
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·공고 실시사실 게시
  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·군·구(남양주시) 정보통신망(남양주시 홈페이지, http://www.nyj.go.kr)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(국토교통부) 정보통신망
  - : 공고 및 공람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
  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s://www.eiass.go.kr)
    - : 공고 및 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
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
  - 공람기간 : 20~40일 범위 (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)
  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청장(남양주시)의 의견을 들어 공람장소를 선정하고, 해당장소에 주민열람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
  -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'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부', '주민의견 제출서'를 비치할 것임

#### 다. 설명회 개최

○ 설명회는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,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

## 라. 공청회 개최

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6조제1항에 의거,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
- -사업의 개요
- 공청회 일시 및 장소
- -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# 마.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

-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
   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
  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
-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
-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이상 공고
- 해당 시·군·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
-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
-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,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,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